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공고 제2021 - 23호

# 2021년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 「수출형 수산식품 및 가공기술 개발 지원」 추가 모집 공고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에서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산식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수출형 수산식품 및 가공기술 개발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목포시 수산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6. 29.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장



###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수산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및 목포시 수산 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 지원규모 : 15건 총 6억원
- 사업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6.29(화) ~ 7.8(목) [10일간]	센터 및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7.5(월) ~ 7.8(목) 18:00까지 [4일간]	
서면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7.9(금) ~ 7.13(화) [3일간]	접수기업(서류평가)
운영평가위원회(대면 또는 화상)	7.15(목)	대면 또는 화상 평가 및 선정
결과발표	7.16(금)	센터 홈페이지 공고
협약기간	7.16(금) ~ 7.21(수) [4일간]	사업협약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10.29(금)	
결과보고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정산 관련서류 제출
기업지원금 최종정산	결과보고 점검 후 5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마감 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제외

## II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추가모집 6개사(수출강화 3개사, 역량강화 3개사)

구 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자격	모집기업	지원금액	비고
					건당(천원)	
수출 강화	기업 신제품 개발지원	수출 강화 패키지 지원 (수출 신제품 개발, 시험 분석, 포장패키지 등)	매출 10억 이상 기업	3개사	50,000	지원양식 붙임1 기업지원 가이드북 참조
역량 강화	가공기술 고도화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	수산 가공 기술 개발 패키지 지원 (공정 개발, 인증, 품질분석, 지식재산권 등)	창업자(3년 이내) 및 매출 10억 미만기업	3개사	20,000	
합 계				6개사	210,000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기업지원금의 최대 70% 선지급**(사업 완료 및 정산완료 후 30% 지급)

※ 기업신제품개발지원 우선 수출국가 : 북미(미국), 동남아(베트남, 태국), 동북아(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 우선 수출국가 외 4대권역내 국가의 경우 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가능

○ 지원 시 유의사항

- 1)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2) 운영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 등 사업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 3) 선정 기업은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 하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를 입금 후 협약 체결
- 4) 선정된 기업이 협약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발급할 경우 협약 불가로 차순위 기업 대체 선정

## III 지원자격

○ 본사 또는 공장, 부설연구소, 지사 등 사업장 중 1개 이상의 주소지가 목포시 소재인 수산식품산업 관련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목포 소재 기업 우선지원

※ 단, 목포시로 당해연도 내에 본사이전, 공장신축, 지사 설립 완료 예정인 타 지역 기업의 경우 토지 구매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주소지 : 목포시에 한함) 등의 서류 증빙 제출 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할 수 있다.

- 1) 수출강화(기업 신제품개발지원) : 매출 10억 이상 수산식품 제조기업
- 2) 역량강화(가공기술 고도화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 : 수산식품산업 분야 창업자(3년 이내) 및 매출 10억 미만 수산식품산업 기업

※ 단, 매출액 10억 이상 수출기업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역량강화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 3) 수산식품 분야 제조업(식품, 수산식품 제조업 등) 허가를 사업자등록증상 취득한 목포시 소재 기업 ※ 접수마감일 이전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 한함
- ※ 단, 역량강화 분야에 한해 제조업을 미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 우대사항(평균점수 가점)

- 1) 수출우대국가\* ①구매 계약서 증빙 문서 제출 시 가점 최대 5점 이내
- 2) 수출우대국가\* ②구매 요청서 증빙 문서 제출 시 가점 최대 3점 이내
- 3) 수출우대국가\* 개발 의뢰 협약 문서 제출 시 가점 1점

\*북미(미국), 동남아(베트남, 태국), 동북아(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①구매 계약서, ②구매 요청서의 경우 2021년 1월 이후 체결부터 인정함.

○ 지원제외 대상

- 1)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및 단순 원물유통기업
- 2)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중도 포기자 포함)
-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단, 협약 전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6)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7)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유동비율 50% 이하 그리고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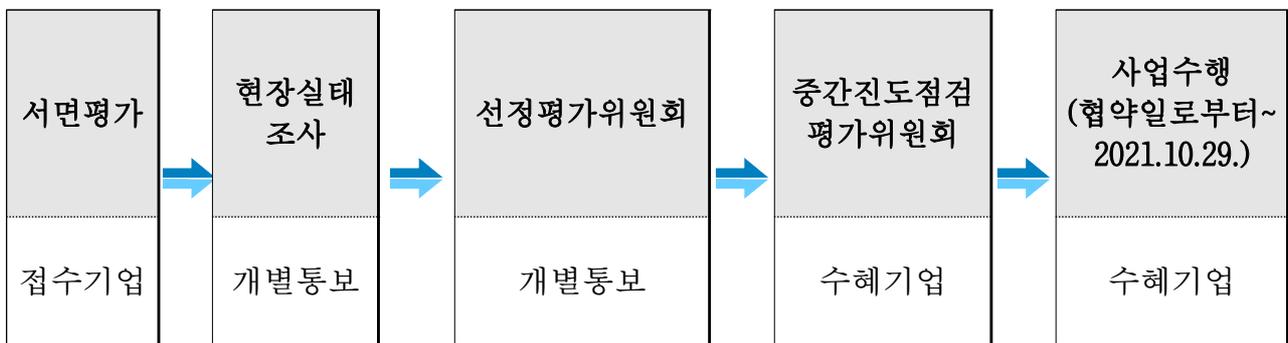
②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③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창업기업

## IV 평가방법

- 접수기업 서면평가, 기업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 1) 대상 : 신청 접수기업
  - 2) 구성 : 7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회계사 1인 별도 참석)
  - 3) 사업계획서 대면평가 또는 비대면 화상평가(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타당성 등)
- ※ 외부 전문가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만 선정 조건에 해당
- ※ 평가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규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평가 진행

## V 선정절차 및 사업수행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VI 신청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공통양식 및 지원신청서(붙임1. 기업지원 가이드북 참조)	필수제출
2	사업자등록증	
3	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 2018~2020)	
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우대증빙자료 제출 기업에 한함	해당 시 제출

※ 수출강화(기업 신제품개발지원) 신청 기업은 필히 2020년 매출액 점검.

※ 구매 요청서, 구매 계약서 등 수출 계약 관련 증빙 문서 보유 및 제출 시 우대함.

**VII**

## 수혜기업의 의무사항

○ 선정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필수 제출

1) 정산 제반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견적서 1부, 비교견적서 1부 이상	
2	거래명세서	
3	물품검수조서, 검수사진	
4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거래 영수증	
5	(거래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이체확인증	
6	사업 결과보고서(붙임1. 기업지원 가이드북 참조)	
7	회계감사 확인서	지정 회계사무소
8	매출액 확인서, 수출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9	(기타 사업별 증빙자료) 시험성적서, 품목제조보고 등	
10	(수행 결과물)성과제품 5개 및 고화질 이미지	

- 2)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기업 제반 상황에 따라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선정된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후 5년간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창업여부, 매출, 고용, 투자유치, 지식재산 등 사업성과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4) 수혜기업 진도점검(중간모니터링 방문점검)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사업 진행이 다르거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된 지원사업은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 5) 중간진도점검평가위원회 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현장 방문 점검 후 2차 중간진도점검평가위원회 실시하며, 2차 중간진도점검평가 평균점수 역시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사업은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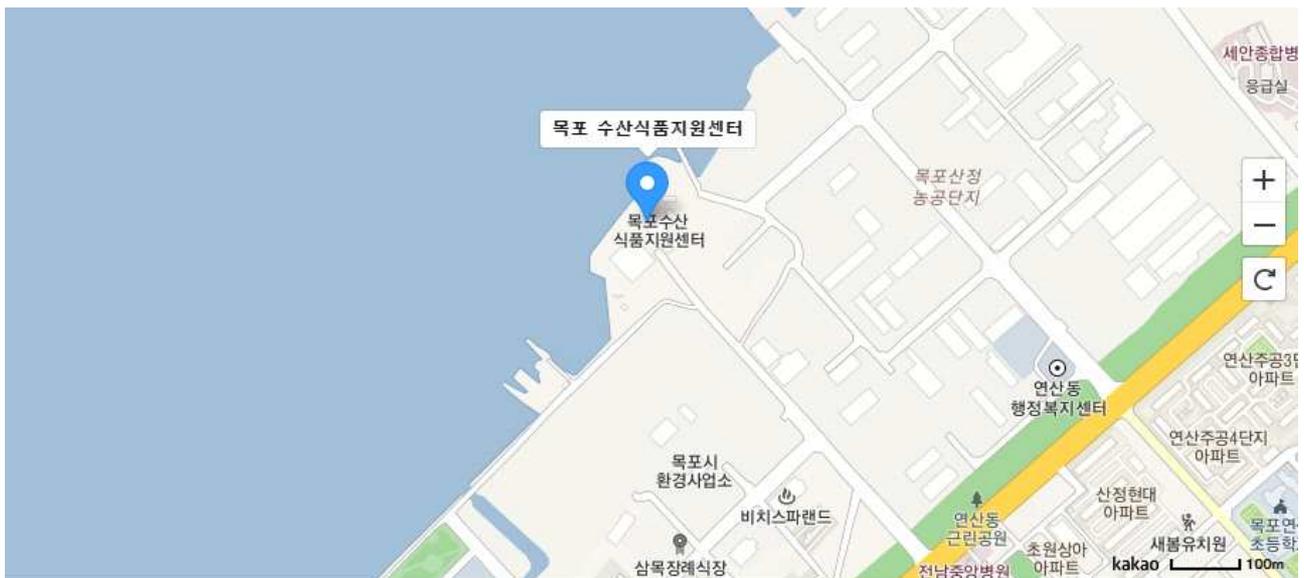
## VIII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1.7.5.(월) ~ 2021.7.8.(목) 18:00까지 [4일간]
- ※ 모든 접수방법의 경우에도 2021.7.8. 18:00 이후 접수 자료는 무효처리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 신청서는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홈페이지(mokpoabo.kr) 다운로드 가능
- 접수처 및 문의
  - 1) 접수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58621)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19번길 52
  - 2) 메일접수 : mokpoabobi@naver.com
  - 3) 문의처

연번	담당 수행기관	이메일
1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강민주 연구원 TEL) 070-4284-9696 FAX) 061-276-1673	mokpoabobi@naver.com

## 4) 찾아오는 길 :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kakaomap

로드뷰 | 길찾기 | 지도 크게 보기



신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719번길 52  
 지번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2021 (우) 58621  
 대표전화 | 061)276-1670